

예 산 총 칙

2011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21,361,034	30,640,831
일반회계	800,619,423	24,018,583
특별회계	220,741,611	6,622,248
공기업특별회계	195,286,675	5,858,600
상수도사업	73,554,513	2,206,635
하수도사업	121,732,162	3,651,965
기타특별회계	25,454,936	763,648
주택사업 특별회계	3,324,324	99,730
교통사업 특별회계	15,834,997	475,050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935,051	28,05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028,201	30,846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2,718,446	81,553
폐기물유발부담금 특별회계	43,000	1,290
대지보상 특별회계	243,748	7,312
기반시설 특별회계	290,371	8,711
수질개선 특별회계	1,036,798	31,10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붙임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붙임 "계속비사업 변경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707,984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7,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